

#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 Q 스페인산(EU) 제빙기를 수입하려합니다

개정2005.3.31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3조 실험결과 인정에 대한 계약) 3항의2조 따르면 ISO9001, CE등의 인증마크를 취득한 물품인데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와 안전인증면제의 허용여부 및 절차 별첨서류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빙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므로, CE 마크 등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시험 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는 안전인증기관이 국·내외 인증기관과의 시험결과 상호인정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인증 면제와 관련한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안전인증은 제조자가 받는 것이나, 외국에 소재한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에 의한 인증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안전인증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시어 인증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을 협의하여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24(경기 군포)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서울 구로)
- ▶ 한국전자과연구원 : 031)679-9591(경기 용인)

## Q 각종 측정기류와 계기류(온도, 압력등)의 교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과 교정의 차이점을 알고 싶는데, 관련법에 의한 정의와 차이점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정 후 교정필증 대신 검증필을 해당계기에 붙이는데 검증필을 붙혀도 되는지 아니면 교정필증을 꼭 붙혀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검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품목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행위를 실시하여 국민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정'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측정오차를 허용오차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교정이 완료되면 운용요령에 근거하여 교정필증은 필히 교부하여야 하며 검정필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에 따라 교정필증 부착이 불가능한 소형기기는 주요사항(교정번호, 교정일자 등)을 수록한 서식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